

의안번호	제 40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1
----------	-----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발의자 : 임병운,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최병운,
윤홍창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등에 관한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충북 도내 사할린 한인 현황 : 241명(청주 70, 제천 108, 음성 63)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나.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 장례 지원, 사할린 현지 가족과의 만남을 위한 항공료 지원 등
- 라.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함 (안 제9조)
- 마.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 28 호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였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하 “영주귀국주민” 이라 한다)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 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 (이하 “지원 단체” 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홍보 사업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사업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6.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
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

8.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영주귀국주민 장례비 추가 지원 및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3. 관련조문

- 가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식비) 및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나. 추계 결과

-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 사업 : 20,000천원
- 영주귀국주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 64,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 사업 : 도비 20%, 시군비 80%
- 영주귀국주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 도비 20%, 시군비 8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김 성 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7,625,510	
국 비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7,205,510	
도 비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시군비	67,200	67,200	67,200	67,200	67,200	336,000	
세 출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7,625,510	
특별생계비	216,900	216,900	216,900	216,900	216,900	1,084,500	
생계·주거급여	1,224,202	1,224,202	1,224,202	1,224,202	1,224,202	6,121,010	
장례지원(식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사할린방문지원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320,000	
재원 조달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7,625,510	
의 존 재 원	소 계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7,205,510
	보조금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7,205,510
	지방교부세	-	-	-	-	-	-
자 체 수 입	소 계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지방세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시·군비	67,200	67,200	67,200	67,200	67,200	336,000	
기 타 (민간 자부담)	-	-	-	-	-	-	